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9조의2의 요약

-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채무보증에 따른 구상 채권,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제외).
- 대손금 중 회수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I.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사용·상계

(법 제19조의2)

1. 대손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1) 대손금의 범위와 손금산입방법

① 회수불능 확정금약

당연도에 채권회수불능액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당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데, 대손확정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대손발생 시 먼저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잔액이 있으면 이 금액과 상계처리하며, 그래도 부족하면 대손금을 당사업연도의 판매·관리비에 회계처리반영한 후 손금으로 직접 반영한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채권을 말하는데, 영업상의 채권뿐 아니라 영업관련 채권이 아닌 금액도 회수불능금액은 손금처리할 수 있다. 회수불능대손금은 민법, 상법 및 기타법상 소멸시효경과완료금액, 객관적 회수불능판명액(파산, 강제집행, 형집행,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부도발생 6개월된 어음·채권·조기회수 위한 일부채권포기액 등 기타 외부기관의 회수불능판정금액 등인바, 다음 시행령에 의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 12. 30 개정)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 2. 18 개정)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② 대손금의 의의와 순자산감소

법인은 일상적 영업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외상으로 판매함에 따라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채권을 보유하는데, 도산·도피·상호견해차이 등으로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회수불가능 금액을 대손금이라 하는데 이는 법인이 확보한 자산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순자산 감소의 일종이고 따라서 손금산입한다.

③ 대손금의 발생유형

대손금의 발생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따라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불구하고 그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① 대손사유발생일, 대손계상일 등

◎ 대손발생된 금액(대손금) : 대손금 발생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대손이 확정된 연도에만 손금인식되며 그 이후의 연도에 아무때나 임의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님).

◎ 대손금손금산입의 뜻

① 기존의 대손충당금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 계상되어 있는 금액과 상쇄처리하면 당연도 대손금의 손금산입의 결과가 됨.

② 대손충당금상계 후 잔액이 부족한 경우 : 부족한 금액에 대해 판매비·관리비 혹은 영업외비용으로 직접 대손금으로 기표하면 손익계산서상 비용인식하는 것이 되고 세무상 손금산입됨.

③ 대손충당금이 아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대손금 발생액을 판관비 등으로 비용반영하면 직접 손금산입하는 결과가 됨.

◎ 대손금의 손금귀속·산입연도 : 대손사유발생일 혹은 손금계상일(대손충당금 차감 혹은 직접 비용반영)

① 소멸시효완성분 :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의 회수불능액, 경매취소압류채권, 채권회수의무 면제받은 것 등 ⇨ 당해 각 사유발생일(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강제손금산입하여야 하며, 나중에 임의선택 안됨)

② 기타의 사유로 대손처리하는 것(파산 등, 부도 6개월된 어음 등, 소액채권, 채권포기금액 등)

⇒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날(대손충당금 감액기표, 당기비용으로 결산반영한 경우 등, 즉 사유발생되더라도 회사가 대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안됨. 따라서 해당 사유발생하고 재무제표상으로 비용·감액 반영해야 손금산입가능하며,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손금산입 안된다는 뜻임)

⇒ 그러나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합병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② 대손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대손충당금과의 상계

법인은 보유한 채권의 변제불능 등을 예상하여 미리 대손충당금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에게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생기면 당해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손금이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면 초과차액은 직접 당해 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③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대손이 발생되면 이미 계상반영된 대손충당금과 대손발생연도에 상계처리하며, 대손충당금이 없으면 당년도에 대손금으로 비용반영한다.

여기서 대손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당년도에 추가설정하여 손금산입하므로 결국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는 것도 당년도에 손금처리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된다. 그리고 일단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범인의 채권이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다시 회수될 경우에는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예컨대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동 경매가액 중 국세를 공제한 잔액을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채권에 충당한 후 미회수채권을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경우, 그 후 우선 공제한 국세가 감액 결정되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국세를 환급받아 동 환급금으로 이미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도 당초의 대손금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송의 확정으로 채권의 일부가 회수된 때에는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 손익수정손실로 계상했다라도 이는 결산상 손금회계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3) 외수불능채권·대손금의 범위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① 세무상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세무상 손금인정되는 대손금은 그 발생 사유로서 소멸시효 경과채권, 파산·형집행·폐업·사망·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명된 채권만 해당된다. 따라서 범인의 채권이 비록 회수불가능하다고 스스로는 판단되더라도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각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완성,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은 대손금으로 첫째, 소멸시효 완성형 둘째, 공적 승인기관의 승인형 셋째, 파산·형집행·폐지·실종 등 객관적 회수불능 근거형

넷째, 6개월 경과된 부도어음·수표 및 경매취소된 압류채권 다섯째, 국세결손 처분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소액채권과 기타의 회수불능채권 등 크게 5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③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으로 인한 대손금

채권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의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한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실패로 인한 도산·부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회수불능의 객관적 입증과 대손처리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려면 채권이 회수불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민법·상법·어음법·수표법상의 소멸시효완성기간

사계약상 많이 발생하는 대여금과 선급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의거 10년인바, 배당금지청구권도 배당결의로 인해 주주와 회사간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사 채권·채무관계로 민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관에 3년 또는 5년의 제척기간을 정하여 동 기간이 경과하면 주주의 배당금지청구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당히 제한하게 되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본다. 민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민 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⑥ 포기회수 위한 채권납부포기금액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권의 포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밖에 다음의 민법규정도 권리·의무관계의 명확화를 위해 3년 혹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민 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97. 12. 13 개정)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 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⑦ 상사시효 5년 혹은 3년

다음의 상법 제64조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5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단서조항에 의하여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제6호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받아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관련법령

● **상 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기 규정에 의한 채권 중 각각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1년 혹은 3년을 적용받는 것 이외의 기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3년 단기소멸시효적용 채권은 3년이 되는 시점에 손금반영하여야 하며 임의로 5년을 선택할 수는 없다. 어음법 규정에 의한 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간이라고 다음의 규정이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10. 3. 31 개정)
-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10. 3. 31 개정)
 -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10. 3. 31 개정)

다음의 수표법도 수표의 소멸시효로서 6개월간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수표법 제51조 【시효기간】

-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10. 3. 31 개정)
-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10. 3. 31 개정)

● 수표법 제58조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10. 3. 31 개정)

⑧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기산일 및 소멸시효 완성시점의 손금산입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능시점부터 진행하며,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관련 민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민 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 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민 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 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 인

● 민 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

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민 법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민 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이득상환청구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시효 기간 완성으로 대손금은 확정되고 그 후 청구권에 기하여 회수된 금액은 상각 채권추심익으로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⑨ 한국은행 등 공인기관 증인연은 채권의 손금산입

금융회사 등은 한국은행 등의 감독을 받고 있고, 대외거래를 하는 법인은 대금의 수수나 결제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행하는데, 이들은 법인과의 채권·채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고 실제의 이해관계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물품의 수출관련채권으로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도 대손사유가 된다.

⑩ 부도어음·수표의 대손금 회계처리 반영

부도어음·수표의 부도일후 6개월후부터 대손금계상반영해도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손금처리한다. 6개월이 지나도 반영하지 않는다면 대손처리가 안된다.

⑪ 부도어음·수표의 대손처리방법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금액도 6개월

이 경과한 바로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반영한다. 여기서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및 기일전 부도확인받으면 확인일을 말한다. 6개월 부도어음·수표의 대손에 대해 편의상 조기인식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를 위한 비망가액으로 1천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9조익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어음이나 수표를 대손처리함에 있어서의 채무자 범위에는 원채무자, 채무자의 연대보증인·당해 어음·수표의 발행인 및 배서인 등과 같이 당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또한 부도발생 6개월 이상이 되면 일단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충족한 것이 된다(동일거래처로부터 여러 장의 부도어음을 받았다면 이 중 한장만 부도확인을 받아도 거래처 부도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데, 나머지 어음에 대해 대손처리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가능하면 나중에라도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방을 입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법인이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저당권설정액에 대해 부도발생된 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대손처리하지 못한다.

⑫ 부도발생일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며, 지급기일전에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는 지급기일보다 빨라도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즉, 부도난 회사의 어음수

표가 여러 장 있어도 차례차례 각각 어음수표의 만기지급일이 되어야 부도발생일이 되며, 이를 지급기일보다 이른 날자로 땡기려면 은행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방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⑬ 중소기업의 부도발생 6개월된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어음·수표가 없어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매출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물론 채권소유회사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6개월이 지나도 대손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손금반영되지 않고 장부상 손금계상(대손충당금감액 혹은 비용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부도발생일까지 받은 외상매출금은 가능하지만 부도발생일 후부터 받은 매출채권은 6개월 시점의 대손처리가 안된다.

즉, 일반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공통요건은 ①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③ 중소기업장부상 대손처리반영하여야 하며, ④ 해당 외상매출금은 거래처의 부도발생일까지의 거래분이어야 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⑭ 국세결손처분된 채무자의 채권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제외함)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불문하고 대손처리할 수 있다.

⑮ 경매취소압류채권

채권자가 압류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경매할 수 있는데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건질 금액이 없으니까 경매가 취소되는데 오죽하면 경매가 취소될 정도의 금액일까, 그러니까 대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경매로 인한 이익이 제반비용이나 손실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경매나 강제집행을 취소함이 타당한데 이런 경우는 압류된 재산이 있더라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⑩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차손)으로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 혹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시 익금환입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09. 2. 4 신설)

⑪ 기타 채권의 대손처리방법

기타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회수불능정리채권 경락후 회수불능잔액, 무재산 회수불능 상태의 공급회령금액 등은 대손처리가능하다.

4)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권 (법 제19조의2제2항)

① 채무보증구상채권·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제외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으로 보지도 않고, 이러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판명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은 영업상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주요 재화·용역제공 관련해서 발생하였더라도 수익발생과 직접 관련이 적다고 보는 것이며, 특히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성격으로 분류되는 채권은 세법상 특별히 규제대상이므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②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경우도 손금불산입한다.

③ 채무보증업이 주요 사업인 경우의 구상채권 등은 설정가능

각종 금융회사 등은 금융업의 일환으로 채무보증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구상채권,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위탁회사·증권거래법상의 증권회사의 채무보증관련 구상채권,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채무보증구상채권은 주요 영업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며, 대손금으로도 인정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합리화 계획이나 기준에 의거 인수하는 보증채무관련 구상채권, 국제경쟁력강화 위한 채무보증구상채권, 중소기업 사업지원관련 위탁기업체가 수탁중소기업을 위한 채무보증의 구상채권 등도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으로 보며 관련 대손금도 손비인정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2010. 2. 18 개정)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 제 (2010. 7. 21)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손금 계상한 대손사유발생시 손금산입**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신용보증계약에 의해 대위변제한 금액 중 손금계상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나 이 경우 대손사유발생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9조익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⑧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신설)

II.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 · 익금환입

- ① 대손충당금설정 → 대손시 사용 → 미사용액 환입 → 대손액 반환시 익금
- ◎ 영업상 채권 등에 대해 회수불능액추산하여 대손충당금설정하여 회계반영 및 손금산입
- ◎ 회수불능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반영(대손충당금감액 혹은 대손상각비로 비용·손실·원가반영)
- ◎ 당연도 대손금발생시 기설정충당금 먼저 상계
- ◎ 전연도 설정액 혹은 상계 안된 잔액의 일시 익금산입

- ◎ 손금산입·대손충당금 감액한 대손금을 향후 회수시 회수연도에 상각채권 추심이익 등으로 영업외 수익처리하고 익금산입함

1.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 (법 제34조제4항)

① 상계·사용후 대손충당금잔액 익금산입

본 항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대손금과 먼저 상계하고 나서 남은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매기별로 세무상 손금 및 익금을 총액으로 반영하고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당기에 익금산입할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대손금과 상계한 후의 나머지 잔액이다.

상기 시행령 및 조정명세서를 참고하여 당기에 익금산입할 대손충당금잔액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rray}{ccccccc}
 \boxed{\text{당기 익금에 환입할}} & = & \boxed{\text{장부상 대손충}} & - & \boxed{\text{세무상 대손충당}} & - & \boxed{\text{기중 대손충당금}} \\
 \boxed{\text{대손충당금 잔액}} & & \boxed{\text{당금 기초잔액}} & & \boxed{\text{금 부인누계액}} & & \boxed{\text{의 임의환입액}} \\
 & & & & & & \boxed{\text{(회계처리반영)}} \\
 & & - & & - & & \\
 & & \boxed{\text{당기의 대손금}} & - & \boxed{\text{당기 설정충당금}} & & \\
 & & \boxed{\text{상계액}} & & \boxed{\text{보충액}} & &
 \end{array}$$

2. 회수한 대손금의 익금산입시기 (법 제19조의2제3항)

① 회수연도에 익금산입

기업회계기준상 임시적 이익인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일반적으로 영업외손익으로 보아 당기순이익에 가산함이 일반적이다. 세법도 같은 방법으로 익금산입한다. 즉, 본 항도 세법상 적법히 처리(대손금, 대손충당금 감액 등)된 대손금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I. 대손금 명세서 제출 (법 제19조의2제4항)

내국법인으로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⑨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